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185

발의연월일: 2021. 8. 24.

발 의 자:서영석・인재근・양정숙

최종윤 · 임종성 · 이해식

김원이 · 이정문 · 박상혁

노웅래 · 문진석 · 민병덕

유기홍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,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는 부족한 상황임.

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은 3%로, 미국 59%, 영국 39%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록을 보이는데, 장기기증에 대한 막 연한 두려움과 정책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,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,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,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 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 고자 함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, 제10조제2항제4호의2, 제31조 및 제3 2조, 제32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"홍보 및 홍보사업"을 "교육·홍보 및 교육·홍보 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장기등기증자"를 "장기등기증희망 자 및 장기등기증자"로, "지원정책"을 "예우 및 지원정책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의 지원

제31조제2항제4호 중 "장기등기증자"를 "장기등기증자,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"으로 한다.

제32조제3항 중 "국가"를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"로 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교류활동 지원)

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(기증자 본인이나

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)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, 범위 및 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| 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|
| 의무) ① (생 략) |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| 2 |
| 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 | |
|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 | |
| 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 | |
| 다. |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 | 2 |
| 한 각종 <u>홍보 및 홍보사업</u> 에 | <u>교육·홍보 및 교육</u> |
| 대한 지원 | <u>• 홍보사업</u> |
| 3. <u>장기등기증자</u> 에 대한 <u>지원정</u> | 3. <u>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</u> |
| <u>책</u> 의 마런 및 추진 | <u>기증자예우 및 지원</u> |
| | <u>정책</u> |
| 4. (생 략) | 4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|
| | 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|
| | 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 |
| | <u>적·재정적 계획을 수립하고</u> |
| | <u>추진하여야 한다.</u> |
| 제10조(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) ① | 제10조(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) ①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 | 2 |
|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 |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5. (생략)

③ (생략)

제31조(비밀의 유지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 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
- 지원 등) ① ② (생 략)
 - 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-----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④·⑤ (생 략) <신 설>

| 1. ~ | 4. (현행과 | 같음)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|
| <u> 4의2.</u> | 제32조의2여 | 에 따른 | 장기등 |

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 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 류활동의 지원

- 5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비밀의 유지) ① (현행과 같음)

| (2) | | | |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|
| | | | | |
| | | | | |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-----장기등기증자,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-----

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32조의2(장기등기증자등과 장 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교류활

동 지원) ① 국립장기이식관리 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 (기증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)과 장기등을 이 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, 범위 및 방법과 그밖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